

청주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2가단595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한수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변 론 종 결 2023. 2. 10.

판 결 선 고 2023.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21. 5.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청주지방법원 2021. 5. 18. 접수 제62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2. 2. C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2천만 원을 대출하였으며, C은 2021. 6. 28.경부터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다.

나. 피고는 2021. 5.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 같은 날짜 증여(이하 편의상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D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164,34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을 87,7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가 2021. 8. 24. 및 2021. 5. 21. 각 말소되었다.

라. C과 피고는 2012. 7. 1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2021. 6. 14.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피고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고, 가사 재산분할로 보더라도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에 해당한다. 결국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며,

정당한 범위 내에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대출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여부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나)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9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와 C의 혼인과정 및 혼인기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 재산상황,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장래 생계유지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의 실질을 갖고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와 C 사이에 이혼 무렵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2019년식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에게, 시가 약 2,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는 C에게 각 귀속되었다.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시세는 대략 3억 원 전후로 보이기는 하나,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미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혼 이후 피고가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33,309,173원,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 59,169,945원을 각 변제하였다.

②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피고와 C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자녀(F과 G, H생 쌍둥이)가 있었고 위 자녀들을 이혼 후 모두 피고가 양육하고 있으며 C으로부터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여 보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양육비의 선급으로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③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해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피고와 C의 혼인생활은 C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룡

별지